

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

제정 2015. 5. 4 규칙 제549호
일부개정 2016. 7. 5 규칙 제587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18. 3. 28 규칙 제619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19. 1. 1 규칙 제645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20. 12. 29 규칙 제691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23. 3. 6 규칙 제743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동회장의 위촉)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공동회장은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한다.

제3조(위원의 위촉)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개 또는 추천에 의한다.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 협의회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맞는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공개에 의할 때에는 기간, 인원 등을 기재한 공개모집 안내문을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,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추천에 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추천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행정지원단의 구성)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행정지원단은 분과위원회 관련 실·과장으로 별표 1과 같이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의 위촉)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공동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위촉한다.

제6조(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 할

수 있다.

1. 정책기획 분과위원회 : 지속가능발전지표, 지표평가, 교육, 정책기획분야의 지표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
2. 안전행정 분과위원회 : 안전, 행정, 주민자치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
3.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: 복지, 문화, 관광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
4. 산업환경 분과위원회 : 환경, 산업, 경제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
5.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: 교통, 도시계획, 도시경관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
6. 여성 분과위원회 : 여성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

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위원중에서 지명한다.

제7조(회의록 등)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 회의록은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

제8조(정보공개 등) ① 협의회는 모든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,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,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공청회 등의 개최 및 자료제출 요구)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하거나, 공청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,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또한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7.5 규칙 제587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“평생학습과장”을 “평생교육과장”으로 하고, “축산임업과장”을 “축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② 및 ③ 생략

부칙 <2018·3·28 규칙 제619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 지역개발분과 중 “도시과장”을 “도시계획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9·1·1 규칙 제645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 생략

제6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 의 관련 국·실·과장 중 “산업환경국장”을 “기업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“기획감사담당관, 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하며, “평생교육과장”을 “교육청소년과장”으로 하고, “사회복지과장, 문화관광과장”을 각각 “노인장애인과장, 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하며, “농정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하고, “여성가족과장”을 “여성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⑮ 까지 생략

부칙 <2020·12·29 규칙 제691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 중 복지문화분과

의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문예관광과장”으로 하고, 여성분과의 “여성보육과장”을 “여성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생략

부칙 <2023·3·6 규칙 제743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 중 “기업환경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, “교육청소년과장”을 “자치교육과장”으로,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, “문예관광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, “기업지원과장, 자원관리과장”을 “기업경제과장, 자원순환과장”으로, “도시계획과장, 교통행정과장”을 “도시과장, 교통정책과장”으로, “여성정책과장”을 “여성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⑫ 까지 생략

[별표 1] 〈개정 2023. 3. 6〉

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지원단(제4조 관련)

구 분	관련 국·실·과장	비고
단 장	복지환경국장	
총 괄	환경보호과장	
정책기획분과	기획예산담당관 자치교육과장	
안전행정분과	행정지원과장, 안전총괄과장	
복지문화분과	복지정책과장, 노인장애인과장, 문화예술과장	
산업환경분과	기업경제과장, 자원순환과장,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	
지역개발분과	도시과장, 교통정책과장	
여성분과	여성보육과장	

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1호서식] (제2조 관련)

제 호

위 축 장

주소(소속) :

성 명 :

귀하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」 제〇〇기 (20 . . . ~ 20 . . .) 공동(상임)회장으로 위촉합니다.

20

이 천 시 장

[별지 제2호서식] (제3조제1항 관련)

제 호

위 축 장

주소(소속) :

성 명 :

귀하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」 제〇〇기 (20 . . . ~ 20 . . .)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20

이 천 시 장

[별지 제3호서식] (제3조제2항 관련)

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○기 위원 신청서

팩스(636-2304) / 이메일 ic21@hanmail.net / 636-2886

성명		생년월일		성별	남	여
소속(직장)				직급		
우편물 수령처 (집 or 회사)	(우 -)					
연락처	(회사)	핸드폰				
	(Fax)	E-mail				
※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. (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)						
산업환경분과위원회()		지역개발분과위원회()		복지문화분과위원회()		
안전행정분과위원회()		여성분과위원회()		정책기획분과위원회()		
상기 본인은 「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」 위원 공개 모집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 . . . (인)						

[별지 제4호서식] (제3조제3항 관련)

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○기 위원 추천 및 동의서

팩스(636-2304) / 이메일 ic21@hanmail.net / 636-2886

성명			생년월일			성별	남	여
소속(직장)				직급				
우편물 수령처 (집 or 회사)	(우 -)							
연락처	(회사)		핸드폰					
	(Fax)		E-mail					
※ 참여를 희망 의제실천위원회에 O표 바랍니다. (위원회는 조정될 수 있음)								
산업환경분과위원회()			지역개발분과위원회()			복지문화분과위원회()		
안전행정분과위원회()			여성분과위원회()			정책기획분과위원회()		
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이천시의 민·관 협력 기구인 「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」의 설립 목적 및 원칙에 동의하며 20○○년부터 20○○년까지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. 20 . . . (인)								
본인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. 추천인 (인)								

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5호서식] (제5조 관련)

제 호

위 축 장

주소(소속) :

성 명 :

귀하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」 제〇〇기 (20 . . . ~ 20 . . .)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20

이 천 시 장